

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1. 4.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사 : 2001. 4. 17

다. 상 정 일 사 : 2001. 4. 17

(제9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회의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재무과장 김 종 철

나. 개정사유

-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 및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 (불가대책 장관회의 2001. 1. 31)에 따라 임대 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기 위한.

다. 주요내용

-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례 제10조 3호중
- 임대주택 “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”를 전용면적 “85제곱미터 이하”로 감면범위 확대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양정열)

- 본 개정 조례안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자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확대키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,
- 임대주택 “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”를 전용면적 “85제곱미터 이하”로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경기 침체로 인한 서민의 가계부담경감과 안정적 주거 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되며,
- 행자부의 허가를 득하고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개정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와의 상충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결의 답변 요지 : “ 생 략 ”

5. 토론요지 : “ 생 략 ”

6. 심사결과 : “ 원안가결 ”

첨 부 :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제3호중 “전용면적 60제곱미터”를 “전용면적 85제곱미터”로 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.
- ②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10조(임대주택에 대한 감면) (생 략)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(생 략)</p> <p>3. <u>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 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 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,000분의 3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0조(임대주택에 대한 감면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전용면적 85제곱미터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